

영등포구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7.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1월 제133회 정례회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 제정안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

-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인구수, 동명칭,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대동제로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 통합 대상 현황

통합 전			통합 후				비 고
동 명칭	인구수	직원수	동 명칭	인구수	면적(km ²)	동사무소 위치	
영등포1동	15,779	11	영등포본동	26,225	1.02	현재 영등포1동	
신길2동	10,446	14					
영등포2동	6,255	12	영등포동	18,054	1.26	현재 영등포2동	
영등포3동	11,799	11					
도림1동	7,819	11	도림동	21,824	0.89	현재 도림2동	
도림2동	14,005	10					
문래1동	15,771	10	문래동	31,042	1.49	현재 문래1동	
문래2동	15,271	1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5항 및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합 조례 제·개정 추진현황

■ 검토의견

- 영등포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 날 산업화 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전산화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 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였는지,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동에서 4개동이 통합되어 18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7. 2.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1994.12.20, 1999.8.31, 2005.3.24>
-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0>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합 조례 제·개정 추진현황

(2008. 6. 25현재)

연번	자치구명	조례추진 현황			통 합 실행일	비 고 (시행일)
		입법예고	개정완료	통합동수		
1	마 포 구	06.11.1~11.21 07.11.19 ~12.10	07. 1. 2(1 차) 07.12.13(2 차)	4 4	08. 1. 17	
2	노 원 구	07.8.28~9.17	07. 10. 2	3	08. 1. 1	
3	성 북 구	07.9.5 ~9. 28	07. 10. 5	10	07. 12. 31	
4	중 량 구	07.9.7~9.17	07. 10. 17	4	08. 1. 1	
5	은 평 구	07.10.18~11.7	07. 11. 29	3	08. 6. 2	
6	광 진 구	07.10.23~11.12	07. 11. 27	1	08. 1. 1	
7	동 작 구	07.10.15~11.5	07. 12. 3	3	08. 2. 1	
8	구 로 구	07.10.23~11.12	07. 12. 7	2	08. 5. 1	
9	금 천 구	07.11.12~ 12.1	07. 12. 10	2	08. 1. 1	
10	양 천 구	07.10.15~11.5	07. 12. 14	2		08. 7. 1
11	강 동 구	07.12.20~08.1.5	08. 2. 1	3		08. 7. 7
12	도 봉 구	07.8.16 ~ 9.5	08. 1. 29	1	08. 2. 18	
13	서대문구	08. 2 ~	08. 3. 10	7	08. 5. 6	
14	강 북 구	08.1.29 ~ 2.18	08. 3. 10	4		08.6.30
15	송 파 구	07.12.30~08.1.19	08. 4. 28	2		08.6.30
16	성 동 구	08.4.22 ~5. 11	08. 5. 30	3		08.8.11
17	용 산 구	08.5.20 ~ 6. 7	08. 6. 19	4		08.6.30
18	강 서 구	08.3.12 ~ 4. 2	08. 6. 24	2		재상정 상임위통과
19	동대문구	08.5.24 ~ 6. 9	08. 6. 26	4		상임위통과
20	관 약 구	08. 6 4 ~ 6.24		6		7.2심의
21	영등포구	08.5.28~6.17		4		7.2심의
22	서 초 구	08. 7~9		10		
23	강 남 구	08. 9		1		
24	종 로 구	미 정		2		
25	중 구	미 정		1		

※ 조례개정 - 19개구 68개동 《통합 11개구 44개동, 확정 8개구 24개동》
추진 중 - 6개구 24개동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